

수질환경기준 유해물질, 생태계 관리 중심으로 전환

환경부는 현행 BOD나 COD로 대표되는 수질환경 기준을 국민건강과 물의 생태계 관리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질환경정책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새로운 수질 환경기준은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국민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의 수질환경기준은 '78년에 제정된 이후 27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그간 하천과 호소의 이·치수나 주변의 산업, 인구, 토지이용도 등 수질관리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3만 7천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폐수도 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나노단위까지 측정할 정도로 수질측정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단순한 이화학적 기준과 일부 항목에 국한된 건강성 기준이 달라진 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거나 완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현행 수질환경기준을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2002년부터 물환경 분야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 선진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수질환경기준과 종합적인 수질평가방법에 대해 7차례(전체회의의 4차례) 논의를 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국내 전문가,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3년 기간의 「물환경 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03.12~'06.10)에 착수하였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4대강 대권역 수질

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우선 그간 연구해온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연구책임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0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중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논의된 내용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이 정해질 수질환경기준의 주요 내용과 방향은 먼저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이 급증함에 따라 BOD와 COD 중심의 단순지표에서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평가지표로 종합화, 과학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2배 강화하고, 위해성 평가치 대비 현황 조사치가 높은 5개 항목을 우선 신규 추가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단계별 확대를 통해 건강보호기준이 현행 9개 항목에서 2015년까지 30여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질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 지표종 기준이 추가되고, 분변(糞便)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뢰성이 더욱 큰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되어 종합적이고 민감한 물환경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BOD 등 유기물질 지표만 가지고 I 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질상태를 체계화, 구체화 하였다.

기존 I, II, III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제시되며, 등급별 수질특성·용도, 서식생물 등 서술적 표현도 같이 제시된다. 또한,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45%이상에 달하는 현행 II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한편, 호소의 경우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한 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유기물질이 유입되면 COD가 2ppm내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호소 COD 기준이 현실화되고, 녹조 발생의 직접적 지표인 클로로필-a가 호소기준에 추가된다.

앞으로 2006년 10월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연구조사에서는 계량화된 다양한 생물지수 개발, 총유기탄소 측정법 도입여부, 퇴적물 관련기준 개발 등을 추진하여 수질환경기준에 추가시킬 예정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목표이자 예산집행 등의 기본이 되는 수질환경기준이 새롭게 바뀌면 수질환경정책과 상수원의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상수원 원수(原水)부터 위해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안전한 수돗물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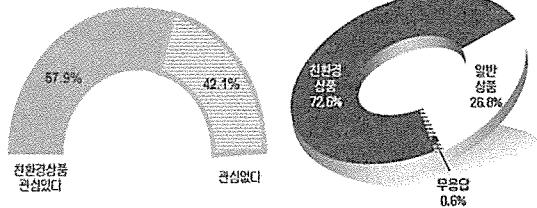
환경부는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현재 수립중인 향후 10년간의 물환경정책을 담은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새로운 수질기준은 2006년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빠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73%가 다소 비싸도 친환경상품 구매 의향

최근 웰빙(Well-being)과 지속가능한 소비(Low-HAS)에 대한 국내의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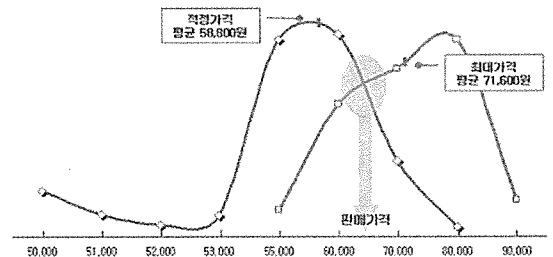
환경부가 국정홍보처와 함께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8%가 평소 친환경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제품과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친환경상품에 대해 일반상품(5만원 기준)보다 20%(5.9만원)~30%(6.5만원)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응답해, 환경성과 함께 뛰어난 기능·디자인을 갖춘 친환경상품이 향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환경상품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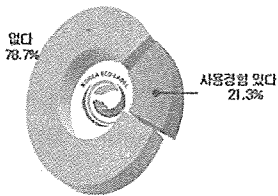
〈친환경상품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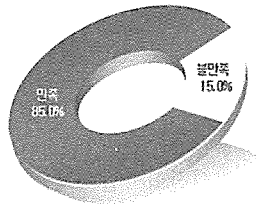
〈친환경상품 구입 적정가격 및 지불 최대가격〉

이와 함께 국민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인식도도

71%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환경마크 제품의 우수성과 사용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공감할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의한 친환경상품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과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으며, 9월말까지 107개 품목 2,517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상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친환경상품 사용경험에 대한 설문에는 대상자의 21%가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고,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82%)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자의 80%가 인체무해, 환경보전 등의 사유를 들어 친환경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불만족스러운 경험자는 품질을 첫번째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상품 사용 경험〉



〈친환경상품 사용 만족도〉

일반제품과 비교해 품질에 불만족을 표시한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다 환경친화성을 우선하는 친환경상품의 특성에 대해 다소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친환경상품도 일정부분 품질을 확보할 경우 일반제품과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친환경상품 구매·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①굳이 친환경상품을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서 (41%) ②판매하는 곳을 몰라서/ 판매처가 적어서 (33%) ③비싼 가격(12%)을 비구매사유로 들어 친환경상품 확산을 위해 정부와 기업·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향후 수행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친환경상품 선호도를 실제 구매로 연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친환경상품이 가져다 주는 환경·경제적인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며,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함께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고양 국제전시장(KINTEX)에서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의 주관부처로서 솔선을 다하고 있다. ◀

「월간 '환경기술인」 홍보광고 안내

- 광고 SIZE: 4×6 배판
- 문의전화: (02) 852-2291
- 담 당 : 김기섭 광고팀장(019-436-3621)